

청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합11972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윤현진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20. 3. 25.

판결 선고 2020. 4.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35,651원 및 그 중 274,180,592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95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33,4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3,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2019. 3.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3. 6. 접수 제26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35,651원 및 그 중 274,180,592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2 내지 3항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8. 12. 27. 체결된 112,944,168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12,944,1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그 내용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① 2015. 1. 21.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20. 1. 2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7. 4. 27. 보증원금 261,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26. (이후 2019. 4. 26.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이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소요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9. 4. 1. 이래로 연 8%이다.

3)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을, ②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90,000,000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9. 3. 20. 자금난으로 인한 원금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신용보증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2019. 5. 29.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1,327,593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262,852,99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지급금 1,488,949원, 미수위약금 366,110원이 각 발생하였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및 재산관계

1) 피고 B은 2018. 11. 23.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100분의 95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과 C은 2019.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은 100분의 5 지분, 피고 C은 100분의 9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9. 3. 4. 자신의 위 100분의 5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3. 6. 접수 제266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9. 5. 29. 중소기업은행에 274,180,592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11,327,593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62,852,99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지급금, 미수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보증사고로 발생한 대지급금이 1,488,949원, 미수위약금 366,110원에 이르는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35,651원(= 대위변제금 274,180,592원 + 대지급금 1,488,949원 + 미수위약금 366,1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4,180,59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5. 29.부터 이 사건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9. 10. 29.까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인 2019. 5. 29. 위 274,180,59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등을 취득하였지만,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한 원금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4달도 지나지 않은 2019. 3. 20.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권과 청주시 흥덕구 D빌라 E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데, 위 분양권의 가액은 피고 B이 당시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33,47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30,47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옵션의 계약금 3,000,000원)이고, 위 D빌라의 당시 거래가격은 61,000,000원 정도인 반면, 위 D빌라에 2016. 5. 23.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76,035,65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5 지분에 관한 소유권과 위 D빌라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게 여전히 위 276,035,65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위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분양권은 그 성질상 위 부동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 중 100분의 95 지분, 100분의 5 지분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과의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과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과 C이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 3. 5.에서야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분양권 내지는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C에게 이를 모두 이전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재산분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증여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 B이 2018. 12. 27. 피고 C에게 112,944,168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8. 12. 27.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91,880,470원(= 잔금원금 91,410,000원 + 연체금 470,470원), 이 사건 부동산 옵션의 잔금으로 12,061,760원(= 잔금원금 12,000,000원 + 연체금 61,760원), 이 사건 부동산 옵션의 이자후불로 9,001,938원(= 원금 8,955,848원 + 연체금 46,09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나 제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자신의 명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213,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이 실행된 날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마찬가지로 피고 C이 자신의 명의로 G, H에게 금원을 차용하였고, 특히 G에게 금원을 차용한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등을 납부한 점, ③ 피고 B이 피고 C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이체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차후에 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채무를 직접 부담하여야 하고 그 출처 또한 비교적 명확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과의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3. 다. 1). 다).와 같이 피고 B과 C의 관계나 위 협의 이혼의 시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C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법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가능한 것인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경험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분양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최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이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이 30,47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옵션의 계약금이 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이 사건 분양권의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시가 33,4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3,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도형석

판사김태형

판사장지웅

별지